



# 특별 공지

워싱턴주 국세청

2010년 5월 11일

## 판매세 과세 대상 생수

### 배경

2차 대안 상원 법안(2ESSB) 6143 파트 9에 의거하여, 제한적인 면제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소매세가 생수 판매세에 일시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요약

2010년 6월 1일부터 2013년 7월 1일까지 생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 대상이 됩니다.

### 생수의 정의

생수란 안전하게 포장된 용기 또는 인간의 소비를 염두에 둔 포장 용기 안에 담긴 물을 말합니다. 생수는 칼로리가 없고, 아래의 원료를 제외하고 감미료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 향미생물제, (ii) 불소, (iii) 탄산염화, (iv) 비타민, 미네랄, 전해질, (v) 산소, (vi) 방부제, (vii) 향신료 또는 과일에서 추출된 향료, 추출물, 수액 등만.

생수에는 생수와 함께 판매되지 않는 안전하게 포장된 재사용 가능 용기에 담아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물도 포함됩니다.

생수에는 얼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ESSB 6143에 따라 얼음의 과세 대상 여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세청 규정, 워싱턴행정규정(WAC) 458-20-244 에 의거해서 판매세는 정육면체 형태, 갈린 형태, 과쇄된 형태로 판매 또는 10파운드 이하 용량의 얼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지 형태, 용기 형태 또는 10파운드 이상의 단위, 그리고 중량에 관계없이 덩어리(block)로 판매되는 얼음은 식품 또는 식재료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같은 얼음에는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셀프 서비스 판매기에서 나온 물은 용기가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는 한, 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자신 소유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빈 용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용기 구매 비용은 판매세 대상입니다.

특정 제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제품 라벨 사본을 가지고 국세청으로 판단을 요청해 주십시오. 세금 판단 요청은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Taxpayer Information and Education  
PO Box 47478  
Olympia, WA 98504-7478

또는 [rulings@dor.wa.gov](mailto:rulings@dor.w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면제

신규 법률 상 생수 구매 시 두 가지의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건을 청구하는 소비자는 면제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1. 휴대용 생수의 무원천

소매세와 사용세는 휴대용 생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천이 없는 사람에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병에 든 생수를 판매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대용 생수는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한 물을 말합니다.

### 2. 처방전에 의거하여 환자에게 제공된 물

판매세와 사용세는 질병 또는 의학적인 상태의 치료, 완화, 진료, 예방을 목적으로 처방된 처방전에 의거해서 환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사람이 마시기 위한 생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란 주법에 의해서 처방전 작성을 해도 된다는 응당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두, 서면, 전자, 기타 전달 방법의 형태로 발급한 명령, 화학식, 안내장을 말합니다.

## 면제 청구

### 판매자의 작업장에서 구매한 면제 생수의 환불

식품점 등 판매자의 작업장에서 생수를 구매한 판매자는 면제 사항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세를 수령해야 합니다. 면제 생수로 지급한 누적 판매세액이 최소 \$25가 되면 소비자는 국세청에 직접적인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병에 담긴 생수에 지급된 판매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환불 최소액인 \$25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면제 생수의 영수증을 누적하여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면제 생수의 초기 구매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세금이 발생한 연도의 말부터 4년 안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 양식과 안내 사항은 6월 1일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dor.wa.gov](http://dor.wa.gov))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례:** 한 주택소유자가 해당 용수 구역에서 오염된 용수가 일시적으로 공급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염 기간 동안 동네 식품 가게에서 개별 포장된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기로 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생수를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판매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는 이 기간 동안에 구입한 생수에 대해 주정부세와 현지세로 총 \$30를 지불하였고, 영수증을 모아두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국세청에 지급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달 서비스로부터 구매한 생수

생수와 함께 판매되지 않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겨서 소비자의 거주지로 배달되는 생수 배달 서비스 등의 업체는 소비자가 적합한 면제 인증서를 보여주면 판매세 징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면제를 받으려면 인증서를 갖추어야 하고 면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거주지에 배달되는 생수의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판매자가 소매세 면제 인증서(*Buyer's Retail Sales Tax Exemption Certificate*) 또는 판매세 간소화 면제 인증서(*Streamlined Sales Tax (SST) Exemption Certificate*) 중 하나의 온전한 사본을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면제 인증서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생수의 판매를 보고할 때 판매자는 **Retail Sales (line code 01)**에 따라 면제 생수 판매를 총 매출에 반드시 포함한 후에, “면제 생수”를 공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Other (line code 0199)** 하의 공제 상세 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해당 인증서에 따라 판매된 가장 최근의 판매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 기록과 함께 이 면제 인증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례:** 한 주택소유주가 지역사회 용수 공급원의 용수가 장기간 동안 오염 상태가 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물을 배달시키는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주마다 배달 서비스는 5갤런의 포장 용기에 담긴 물을 배달해주고 빈 용기를 수거해 갑니다. 주택소유자는 구매자 소매세 면제 인증서(**Buyer's Retail Sales Tax Exemption Certificate**) 또는 **SST 면제 인증서(SST Exemption Certificate)**를 배달 서비스 업체에 보여주고 오염된 기간 동안에 생수 구입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매업체 표시

사탕류, 생수, 껌류가 판매세 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소형 표식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식에는 소비자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정보도 나와있습니다. 소매업체는 표식을 인쇄해서 적합한 장소에 게시하면 됩니다.

###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SNAP)

소매세는 일반적으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 하에서 구매된 생수 등의 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AC 458-20-244**를 참조하십시오.

### 자세한 정보

새로운 법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웹사이트 [dor.wa.gov/newlegislation](http://dor.wa.gov/newlegislation)를 방문하셔서 **Bottled water exemption repealed**를 클릭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dorcommunications@dor.wa.gov](mailto:dorcommunications@dor.wa.gov)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국세청 전화정보센터 **1-800-647-7706**으로 전화하십시오.